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

김 성 주*

Kim, Sung-Joo

Ⅰ 목 차 Ⅰ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 V.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많은 대도시지역은 복지지출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빈약한 복지혜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지수, 전체보호대상자수, 자체부담비율,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도, 시, 군, 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전체보호대상자수에 대해 유의미하지만 재정력지수는 어떠한 계층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결과는 현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수요인 전체보호대상자수에 영

향을 받아 그 재정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불균형은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정력지수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며,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배분시 재정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은 사회복지 수요가 되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결정요인,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to be equally offered in the country as the national minimum, bu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ere there are many old people, or metropolitan areas where there are many needy people have confronted fiscal pressure, resulting in poor benefit to the residents. On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fiscal unequalness caused by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estifying shows that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at the fiscal capac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considered when the central government donates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This suggest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criterion in distributing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at the differential support of social welfare service to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ir fiscal capacities.

□ Keywords: Subsidy, Determinants of the Subsidies, Social Welfare Service

I.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들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주로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많은 대도시지역은 복지지출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빈약한 복지혜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로 인해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할수록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해마다 그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이 지방재정규모, 특히 일반재원의 신장율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¹⁾ 이와 같은 원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너무 빈약한데다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액의 절대액이 클 때에는 그에 따른 지방비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부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²⁾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에 대한 물음은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특별국고보조사업과 달리 1986년 기준보조율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법정 기준보조율 국고보조사업 결정요인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상의 문제점을 찾고 향후 국고보조금 결정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고보조금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세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재정격차와 재정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둘째, 지방교부세와는 달

1)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04년부터 복지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2007년 현재 약 2조 8,020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약 1조 3,660억원) 보다 두 배 이상(105%)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여유있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서울 송파구, 강남구, 중구 등)이 있는가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등)에서는 과도한 복지사업 분야 자체부담비용 지출로 인해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자체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지 않다(김종순·김성주, 2008).

2) 본 논문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고보조금사업 중 사회복지재정의 개념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및 건강과 노동,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이다. 이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고보조사업은 2006년 확정내시 기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 뿐이므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재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사업을 의미한다(〈별첨 1〉 참조).

리 국고보조금은 그 당시의 정치·행정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크게는 정치적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국가행정의 큰 변화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따로 분리하여 영향분석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를 매년 국고보조금이 심사에 의해 정해지는 특별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기준보조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업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교체나 정책변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같은 시계열적 정치·행정 변화는 고정시키고, 재정격차와 재정수요에 대한 단년도 결정요인 분석만 실시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지수,⁴⁾ 전체보호대상자수,⁵⁾ 자체부담비율,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모형은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내용적 범위인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사업과 매년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보조율이 정해지는 특별사업이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이 법령상 제정되어 있는 법령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계층의 차이로 인한 오류방지를 위해 데이터분석을 시도와 시, 군, 구로 나누어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책결정요인 이론

정책결정요인연구는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초기의 재정학자

3)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법정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유영성·이원희, 2005; 조재환, 2001 외 다수) 대체로 기준보조율(국비:지방비)과 기준부담율(광역:기초)은 법률과 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준수된다고 본다.

4) 본 논문의 재정력지수는 2004~2006 3년간의 평균데이터이며, 구체적인 246개 지자체 데이터를 <별첨 2>에 첨부하였다.

5) 본 논문의 설명변수중 하나인 전체보호대상자수는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수급자수, 65세 이상 노인수, 영유아수, 장애인수를 모두 합한 수이며, 구체적인 246개 지자체 각각의 데이터를 <별첨 2>에 첨부하였다.

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1950~60년대에는 사회경제적 변수가 강조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정치, 행정학자들은 1960~70년대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수에 정치적 변수를 추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까지 이어졌다.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치·행정학자들의 근시안적이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자세를 교정시킴으로써 정책학 혹은 정책분석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 학문적 공헌이 크다(강인재 외, 1993).⁶⁾ 국고보조금 또한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책으로서 그 결정요인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1)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1950년 발표한 Fabricant의 획기적 저서에서, 미국 주들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소득, 인구밀도 및 도시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정부들 총지출액의 차이를 72%정도 좌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경제학자와 재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후 발표된 Brazer 등 많은 재정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Brazer의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지출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구밀도, 가구소득과 타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조였다.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지출되는 보조금,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시정부 등의 하위수준의 정부로 이전되는 보조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 보조금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했음을 거듭 확인하였다.

(2) 정치적 결정요인

주로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정당간 경쟁, 투표율, 당파성, 선거구의 불균형 등 정치적 변수가 정책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양당간의 균형은 각 정당이 가난한 계층(have-not sectors)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들 것이고,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난한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가난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들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복지사업을 정강 정책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이기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체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중요정책들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

6) 반면에 동 연구가 어떤 이론의 수립 및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방대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다.

그러나 Dawson과 Roninson의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소득수준, 산업화, 도시화의 정도가 동일하다면, 정당간의 경쟁이 어떠한가와는 관계없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는 분석결과였다. 정당간경쟁이나 정치적 변수는 정책내용에 차이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회경제적 변수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Dawson and Robinson, 1963; 정정길, 1963 재인용).

2. 점증주의 예산이론

점증주의는 1960년대부터 Wildavsky와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서 왕성히 연구되었다. 점증주의는 지방의회, 자치단체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결정자들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본다. 점증주의는 예산 결정자들의 인지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결정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의 지출수준을 기초로 하여 조금 증감하는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점증주의에서는 예산결정에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현년도 예산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방법론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Wildavsky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예산의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의 점증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 예산정치론에서 보충하였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점증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신무섭, 2007).

3.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분야의 특성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따라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또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비중이 커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제도가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노근, 2007).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와 재정수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비중과 규모를 갖고 있지만, 그 국고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재정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나 노령인구수 등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한 이론은 김종순(2002)에 정리가 잘되어 있다.⁷⁾ 즉, 재정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치단체별로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재원조달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격차는 재원조달능력의 격차 이외에도 재정수요의 격차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투입요소의 가격이 높거나 인구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상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지역의 경우 더 많은 치안, 보건,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효과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재정격차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와 같은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균등화보조금 제도(equalization grants)를 가지고 있다. ACIR⁸⁾은 중심도시와 교외 사이에 존재하는 세출 규모의 격차를 재정격차로 간주한다. 즉, 세출규모의 격차와 재정격차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재정지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특성상 높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과 지방채의 발행, 재산매각수입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고지출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평균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하면서 높은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저부담-저세출정책을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요소비용, 기술규모, 인구규모의 차이에 따라 생산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세출이 동일한 서비스수준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는 본 논문의 주요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의 규모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인지, 해당 지역의 특별한 수요(기초생활보장자수, 노인인구수 등)에 의해서 인지는 IV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7) 지방재정관련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서적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김종순(2002)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재정격차와 재정수요의 차이로부터 접근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국고보조금의 영향요인을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8)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정부간관계자문위원회)

(2) 정치적·행정적 환경

국고보조금과 정치·행정적 환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 즉, 정치와 행정 변화가 보조금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어왔다. 임성일·서정섭(1991)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1987년도 대통령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선거지지율과 1인당 국고보조금과의 관계를 道 단위로 회귀분석하였고, 그 결과 결정계수(R²)와 상관계수가 모두 0.1이하인 것으로 판명되어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상경(1995)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간의 국고보조금과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그 중 정치적 지지도와와의 관계는 박정희(1961~1979)와 전두환 정부(1981~1987)시대에는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하지만 노태우 정부(1988~1992)시대에는 -0.17이고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기간 중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오히려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배분된 결과라고 시사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과정을 거쳐 정치·행정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영향은 전상경(2007)에서 정리가 잘되어 있다. 그는 보조금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pork barrel politics”의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pork barrel은 미국의 의회용어로서 이권법안의 속칭으로 사용되며 정치인들이 정치현금이나 투표로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게 대한 보답으로서 자기지역구민들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부지출을 의미한다.⁹⁾

“Pork barrel politics”란 그러한 정부지출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보조금획득의 정치로 번역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¹⁰⁾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그 규모가 법정화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매년 그 총액이 국가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원이 불안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들어 복지사업 대폭 확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약 1조 3,660억 원) 보다 2007년 현재(약 2조 8,020억 원) 105%가 증가했다.¹¹⁾ 이것 또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분야별 국고보조금의 규모 등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부지출의 편익은 특정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10) 이 부분에서 전상경(2007)은 지방양여금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미 폐지된 제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11) 서울경제신문, 2007. 7. 4(이후 분석대상인 2006년 확정내시액 외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의 연도별 자료확보가 어려워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3) 지방자치제도의 실시¹²⁾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전술한 정치·행정변화가 복지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며 강운호(2001)는 이들을 잘 정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중·김홍식(1992)은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1991년의 지방의회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 구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예산은 그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김태일(1998)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선거 이전인 1993~1995년과 이후인 1996~1997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유재원(1999)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변화에 대해 1992~1994년과 1995~1997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광역시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도와 군에서는 약화되었고, 자치구와 시에서는 강화되어, 자치단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운호(2000)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미실시기(1989~91), 제1기 지방의회구성기(1992~95),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기(1996~98) 등 세 기간간에 사회복지정책의 정향차이에 대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구성은 시·군·자치구 모두의 사회복지정책을 약화시킨 반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은 자치구는 긍정적인 영향, 군은 부정적인 영향, 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¹³⁾. 이상의 논문들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결과는 없는 듯 하다.

12)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도 크게는 정치적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치·행정적 틀 안에서의 정권교체나 행정구역 변경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자치권이 하나이었던 중앙집권 때와는 달리 많은 자치권역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변화로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분리하여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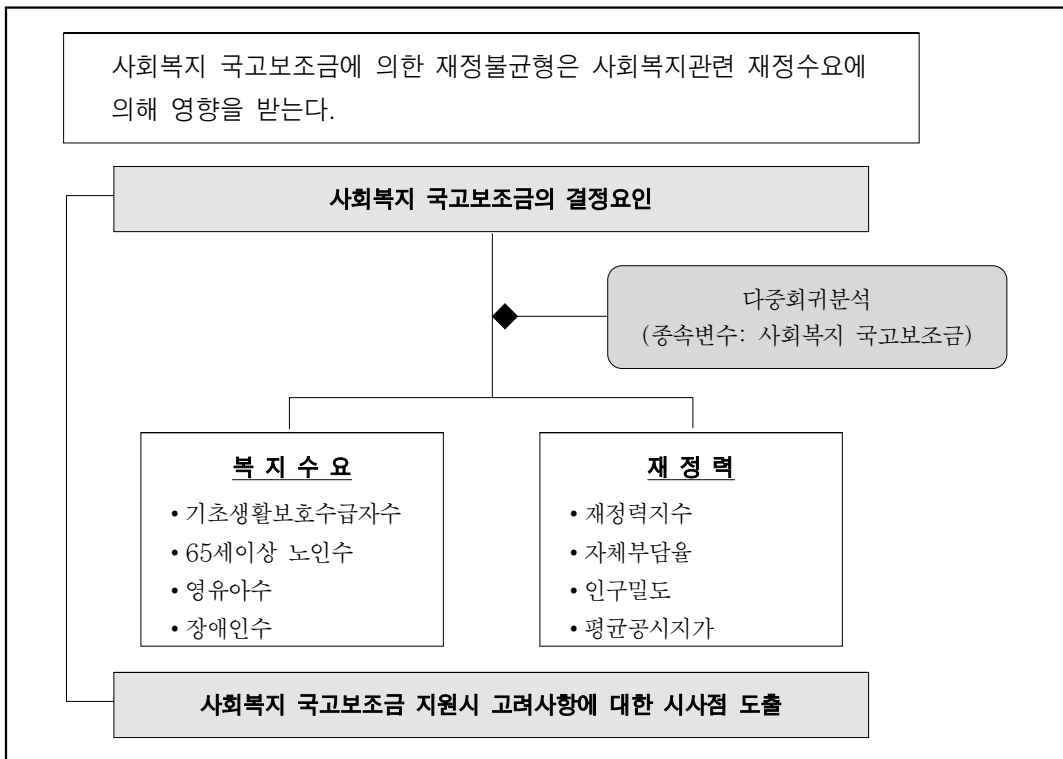
13) 이상의 논문들에서 이승중·김홍식(1992)은 대상연도가 1988년과 1990년을 1992년과 비교한 것으로서, 지방의회 구성후 다음 첫 해와의 비교이므로 지방자치 실시 후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고, 김태일(1998)은 연구대상이 서울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유재원(1999)은 자치단체 유형간에 상이한 결과의 도출 원인을 자치단체 유형간의 정치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 원인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강운호(2000)는 광역자치단체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강운호, 2001).

Ⅲ.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복지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한다. 연구대상은 모든 분석을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사한 사회복지환경을 가진 자치단체별로 비교하기 위해 시도, 시, 군, 구 계층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네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회귀분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대표변수, 세출예산대비 사회복지사업의 부담정도를 알 수 있는 변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와 선호정도에 대한 변수로 나누어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2. 분석대상 및 변수정의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비는 국가부담율인 기준보조율과 지방부담율인 지방비로 구성된다. 이 중 국가부담율에 의해 결정된 국고보조금 중 본 연구의 연구범위인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할 때 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라 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표 1>과 같은 네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결정요인 분석 변수 정의

| 변 수 | 변 수 설 명 |
|--------------|---|
| 재정력지수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정도 |
| 자체부담비율 | = $\frac{\text{시군구부담 지방비}}{\text{세출예산(일반회계)}}$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정도 |
| 전체보호대상자수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노인인구수 + 영유아수 + 장애인수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
|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 - 해당지역의 특성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본 논문에서는 재정력지수, 재정부족액, 지방세율 중 재정력지수¹⁴⁾를 사용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일반회계)에서의 부담정도이다.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체예산항목 중 사회복지사업비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장비항목 비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율인 시도비 비율과 자체부담비율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체부담비율을 이용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수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취학전 영유아수, 장애인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수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짐을 말한다. 따라서 영향요인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보호대상자들을 모두 합친 전체보호대상자수를 사회복지수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이다.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호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구밀도와 평균공시지가¹⁵⁾이다. 이상의 자료는 자치정보화조합 D/B와 지방재정연감 최종예산자

14)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로서, 절대액을 나타내는 재정부족액이나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에 따라 그 비율이 변화될 수 있는 지방세율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데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5)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m²)당 가격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료,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2006년 기준이다.

3. 분석방법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할 것이며, 위의 변수정의에서 나열한 독립변수들을 이용한 함수식과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식(2)와 같이 변수를 3가지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할 것이며, 다음의 함수식에서 나열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가능한 다양한 모형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f (재정력지수, 자체부담비율, 전체보호자수,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Y_i = c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e_i \dots\dots\dots \text{식 (1)}$$

$$\ln Y_i = c + \ln \beta_1 X_{1i} + \ln \beta_2 X_{2i} + \ln \beta_3 X_{3i} + e_i \dots\dots\dots \text{식 (2)}$$

여기서, i : 자치단체
 c : 상수항
 Xi : 설명변수
 ei : 잔차

회귀식 (1)에서 변수 Xi 는 서로 다른 성격과 단위에 따른 비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이를 선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하면 식 (2)와 같고, 이를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해 분석한다.

IV.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확대 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이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약 3%씩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성도 자치단체별로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김중순·김성주, 2008). 그렇다면 실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시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먼저 시도, 시, 군, 구별로 사용한 주요 설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명, %, 원)

| 구분 | 변수(단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시도 | 재정력지수 | .31 | 1.16 | .70 | .29 |
| | 전체보호대상자수 | 118711.00 | 1507174.00 | 561448.06 | 392430.89 |
| | 자체부담비율 | .34 | 3.41 | 1.79 | .93 |
| | 인구 | 558496.00 | 10906033.00 | 3061986.19 | 3025961.24 |
| | 평균공시지가 | 92067.00 | 36074647.00 | 3499109.81 | 8900672.39 |
| 시 | 재정력지수 | .14 | 2.21 | .54 | .41 |
| | 전체보호대상자수 | 4030.00 | 141936.00 | 49494.49 | 28323.60 |
| | 자체부담비율 | .46 | 3.04 | 1.54 | .49 |
| | 인구 | 36846.00 | 1068906.00 | 283830.01 | 228886.88 |
| | 평균공시지가 | 1708.00 | 597891.00 | 77613.67 | 123066.25 |
| 군 | 재정력지수 | .07 | .55 | .164 | .09 |
| | 전체보호대상자수 | 2363.00 | 37635.00 | 18648.76 | 7201.26 |
| | 자체부담비율 | .10 | 1.96 | 1.10 | .42 |
| | 인구 | 10235.00 | 177103.00 | 55379.88 | 29482.29 |
| | 평균공시지가 | 614.00 | 25575.00 | 4833.17 | 4691.77 |
| 구 | 재정력지수 | .11 | 2.27 | .40 | .33 |
| | 전체보호대상자수 | 13671.00 | 106962.00 | 51428.71 | 20882.91 |
| | 자체부담비율 | .56 | 4.93 | 2.16 | 1.10 |
| | 인구 | 50766.00 | 618093.00 | 324396.55 | 145712.72 |
| | 평균공시지가 | 32260.00 | 4191185.00 | 719666.83 | 767916.88 |

계층별로 설명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먼저 시도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인구밀도와, 평균공시지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인구밀도는 평균공시지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시와 군, 구의 경우도 평균공시지가가 재정력지수 또는 인구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명변수간 상관계수

| 시도 | | 재정력지수(a) | 전체보호자수(b) | 자체부담비율 (c) | 인구밀도(d) | 평균공시지가(e) |
|----|----------|----------|-----------|------------|---------|-----------|
| | a | 1 | | | | |
| b | 0.263 | 1 | | | | |
| c | -0.575** | 0.458* | 1 | | | |
| d | 0.889** | 0.195 | -0.471* | 1 | | |
| e | 0.891** | 0.553* | -0.333 | 0.889** | 1 | |
| 시 | | 재정력지수(a) | 전체보호자수(b) | 자체부담비율 (c) | 인구밀도(d) | 평균공시지가(e) |
| | a | 1 | | | | |
| b | 0.286** | 1 | | | | |
| c | -0.355** | 0.481** | 1 | | | |
| d | 0.670** | 0.290** | -0.016 | 1 | | |
| e | 0.750** | 0.209* | -0.183 | 0.957** | 1 | |
| 군 | | 재정력지수(a) | 전체보호자수(b) | 자체부담비율 (c) | 인구밀도(d) | 평균공시지가(e) |
| | a | 1 | | | | |
| b | 0.248* | 1 | | | | |
| c | -0.076 | 0.525** | 1 | | | |
| d | 0.487** | 0.468** | 0.354** | 1 | | |
| e | 0.698** | 0.397** | 0.119 | 0.737** | 1 | |
| 구 | | 재정력지수(a) | 전체보호자수(b) | 자체부담비율 (c) | 인구밀도(d) | 평균공시지가(e) |
| | a | 1 | | | | |
| b | -0.020 | 1 | | | | |
| c | -0.344** | 0.617** | 1 | | | |
| d | 0.195 | 0.242* | 0.033 | 1 | | |
| e | 0.542** | 0.079 | -0.208* | 0.805** | 1 |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따라서 분석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1차 분석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로 평균공시지가를 제외한 후 2차 분석을 실시했다. 2차 분석결과 시도와 군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재정력지수와 0.65 이상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과 구의 경우는 0.5 전후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와 시는 설명변수들간의 좀 더 높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구밀도를 제외한 설명변수들로 3차 분석을 실시했으며, 군과 구는 2차 분석으로 마무리했다. 계층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도의 분석결과

전국 7개 광역시와 9개 광역도에 대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시도의 경우는 최초로 선정된 설명변수들 중 평균공시지가와 인구밀도는 상관성이 높아 이들을 제외한 재정력지수와 전체보호대상자수, 자체부담비율만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시도
(종속변수=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변수 | 3 차 (adj R ² =0.949) | | 2 차 (adj R ² =0.956) | | 1 차 (adj R ² =0.958) | |
|----------|------------------------------------|--------|------------------------------------|--------|------------------------------------|--------|
|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 (상수) | 2.777* | 2.592 | 3.382* | 2.948 | 4.298* | 2.441 |
| 재정력지수 | -0.097 | -0.392 | 0.332 | 0.801 | 0.287 | 0.669 |
| 전체보호대상자수 | 0.761** | 8.075 | 0.728** | 7.633 | 0.584** | 2.568 |
| 자체부담비율 | 0.216 | 1.787 | 0.259 | 2.113 | 0.333 | 2.028 |
| 인구밀도 | | | -0.075 | -1.275 | -0.150 | -1.220 |
| 평균공시지가 | | | | | 0.109 | 0.698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따라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시도의 회귀분석결과 전체보호대상자수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노령인구수, 장애인수 등과 같은 복지수요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도의 재정력과 자체부담비율은 현재 보조되고 있는 복지보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시의 분석결과

전국 75개 시의 경우는 또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평균공시지가와 인구밀도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만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시
(종속변수=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변수 | 3 차 (adj R ² =0.921) | | 2 차 (adj R ² =0.922) | | 1 차 (adj R ² =0.922) | |
|----------|------------------------------------|--------|------------------------------------|--------|------------------------------------|--------|
|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 (상수) | 1.624** | 3.642 | 1.696** | 3.591 | 1.902** | 3.389 |
| 재정력지수 | -0.032 | -0.502 | -0.004 | -0.047 | 0.017 | 0.186 |
| 전체보호대상자수 | 0.796** | 17.574 | 0.794** | 17.346 | 0.791** | 17.111 |
| 자체부담비율 | 0.466** | 5.770 | 0.479** | 5.610 | 0.460** | 5.110 |
| 인구밀도 | | | -0.011 | -0.486 | 0.031 | 0.480 |
| 평균공시지가 | | | | | -0.43 | -0.687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분석결과 시의 경우는 전체보호대상자수가 많고 자체부담비율이 높을 수록 국고보조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가 전체보호대상자수가 0.796으로 자체부담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도 재정력지수는 복지보조금 결정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조금 결정시 시의 재정력은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군의 분석결과

전국 7개 광역시도에 속해 있는 86개 군의 경우는 시도나 시와 달리 인구밀도가 상관성이 그리 높지 않아 2차 분석까지만 실시했다.

<표 6>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군
(종속변수=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변수 | 2 차 (adj R ² =0.727) | | 1 차 (adj R ² =0.728) | |
|----------|------------------------------------|--------|------------------------------------|--------|
|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 (상수) | 4.671** | 5.547 | 4.769** | 5.472 |
| 재정력지수 | 0.383 | 0.855 | 0.514 | 0.970 |
| 전체보호대상자수 | 0.572** | 6.355 | 0.578** | 6.330 |
| 자체부담비율 | 0.647** | 8.058 | 0.642** | 7.904 |
| 인구밀도 | -0.193** | -2.836 | -0.169* | -2.007 |
| 평균공시지가 | | | -0.034 | -0.468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분석결과 군은 전체보호대상자수와 자체부담비율과는 정(+)의 관계를, 인구밀도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전체보호대상자수가 많고 자체부담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는 자체부담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체보호대상자수, 인구밀도 순으로 자체부담비율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많은 만큼 군의 매칭비용도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은 인구밀도가 낮을 수록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분포지역이 대부분 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생활수준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구의 분석결과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에 속해 있는 69개 구의 경우 또한 인구밀도의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2차 회귀분석까지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의 경우 전체보호대상자수와 자체부담비율과는 정(+)의 관계를, 인구밀도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보호대상자수가 많고 자체부담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낮을 수록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의 재정력은 현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구
(종속변수=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변수 | 2 차 (adj R ² =0.761) | | 1 차 (adj R ² =0.814) | |
|----------|------------------------------------|--------|------------------------------------|--------|
| | 회귀계수 | t 값 | 회귀계수 | t 값 |
| (상수) | 5.737** | 5.094 | 7.375** | 6.880 |
| 재정력지수 | -0.238 | -1.792 | 0.144 | 0.975 |
| 전체보호대상자수 | 0.528** | 4.708 | 0.494** | 4.945 |
| 자체부담비율 | 0.564** | 5.760 | 0.517** | 5.898 |
| 인구밀도 | -0.248** | -5.614 | 0.025 | 0.328 |
| 평균공시지가 | | | -0.300** | -4.255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또한 구의 경우 시와는 반대로 인구밀도가 낮을 수록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데, 이는 구의 경우 시와는 달리 모두 광역시에 속해 있고 그 정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 것이고, 이는 집값이나 물가가 높은 것으로 연결되고, 결국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재정력이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은 생활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호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이므로 인구밀도와는 역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V.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최근의 국민의식 향상과 복지정책 강화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하면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노근, 2007)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더 심해지는 재정악화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심화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향후 국고보조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대표하는 변수로 재정력지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정도를 대표하는 변수로 자체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로 전체보호대상자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노령인구수, 취약전 아동수, 장애인수), 해당지역의 선호도를 대표하는 변수로 인구와 평균공시지가 등 전체 5개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시도와 시, 군, 구 모두 공통적으로 전체보호대상자수에 의해서만 정(+)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군과 구의 경우만 인구역(-)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전체보호대상자수, 즉 사회복지 수요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재정력지수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술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해진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생활능력이 약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모이는 곳은 거주비, 생활비 등이 적게 드는 지역이고, 그러한 곳은 대부분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들 보호대상자들로 인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은 국고보조금을 교부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아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지역에 따른 사업종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재정력이나 역량 편차에 따른 차등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 불균형은 전체보호대상자수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시 재정수요에 기준하되 재정력을 감안한 교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 강동욱외(2006), 『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 강운호(2000),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 (2001),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권오성(2006),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체계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김중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김중순·김성주(2008),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태일·김재홍·현진권(20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배인명(1993), “재정 분권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윤영진(2006), “지방정부 예산구조 하에서의 사회복지 재정범위에 관한 논고”,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서울시청외 15개 광역시도(2006), 『시도통계연보』.
- 이근식(1997), 『국고보조금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이남국·양기용(2006),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지출”,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승중·김홍식(1992),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 이재원의(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 이재원의(2007), “사회투자과 지방재정”,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종원·이상돈(2000), 『RATS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박영사.
- 이창균(2001),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임성일·서정섭. 1991.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상경(1995),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간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 전상경(2007),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 정헌울(2004), 『미국의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운영사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
- 한국자치정보화조합(각년도), 내부자료.
- 행정자치부(1990, 1995, 2000~20006), 『지방재정연감』.
- (1998b),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ACIR(1977), Federal Grants: Their Effects on States-Local Expenditures.

Brookings Institution(1976), State and Local Government.

Fri, B and R. Winters,(1970),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Richard E. Dawson and James A. Robinson. 1963. "Inter-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cs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cs, Vol.25.

<http://www.grants.gov>.

<http://www.usasearch.gov>.

<별첨 2> 지자체별 재정력지수와 전체보호대상자수

- 재정력지수는 2004-2006 평균값이고, 그 외 자료는 2006년 기준임.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 및 전체보호대상자수>

| 재정력지수 | | 보호대상자 합계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80:20) | | 노령연금 (70:30) | | 영유아보육시설지원 (50:50) | | 장애수당 (70:30) | |
|-----------|-------------|-----------|----------------|--------------------|---------------|--------------|----------------|-------------------|---------------|--------------|----------------|
| 지역 | % | 지역 | 명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영유아수 | 지역 | 장애인수 |
| 서울 | 1.16 | 경기도 | 1,507,174 | 경기도 | 197,019 | 경기도 | 752,603 | 경기도 | 215,399 | 경기도 | 342,153 |
| 경기도 | 1.14 | 서울 | 1,373,174 | 서울 | 185,934 | 서울 | 710,844 | 서울 | 179,309 | 서울 | 297,087 |
| 인천 | 1.07 | 부산 | 745,349 | 부산 | 128,232 | 경북 | 374,420 | 경남 | 84,699 | 부산 | 254,582 |
| 부산 | 0.92 | 경북 | 669,006 | 경북 | 121,349 | 경남 | 329,820 | 평균 | 63,434 | 전북 | 202,048 |
| 대구 | 0.91 | 경남 | 645,146 | 전남 | 120,662 | 전남 | 320,750 | 부산 | 58,599 | 대구 | 170,530 |
| 대전 | 0.86 | 전북 | 619,834 | 전북 | 113,731 | 부산 | 303,936 | 경북 | 53,423 | 평균 | 134,574 |
| 울산 | 0.86 | 전남 | 596,666 | 경남 | 103,216 | 평균 | 272,826 | 인천 | 52,967 | 경남 | 127,411 |
| 광주 | 0.76 | 평균 | 561,448 | 평균 | 90,614 | 충남 | 267,799 | 전북 | 51,170 | 경북 | 119,814 |
| 평균 | 0.70 | 대구 | 503,420 | 대구 | 87,504 | 전북 | 252,885 | 대구 | 48,864 | 전남 | 107,899 |
| 경남 | 0.62 | 충남 | 478,350 | 충남 | 73,243 | 대구 | 196,522 | 전남 | 47,355 | 대전 | 101,110 |
| 제주도 | 0.53 | 인천 | 390,176 | 인천 | 66,354 | 강원도 | 187,994 | 충남 | 44,674 | 충남 | 92,634 |
| 충남 | 0.52 | 강원도 | 355,982 | 강원도 | 61,456 | 인천 | 178,728 | 광주 | 41,341 | 인천 | 92,127 |
| 경북 | 0.42 | 충북 | 333,791 | 광주 | 57,705 | 충북 | 175,580 | 충북 | 38,981 | 강원도 | 73,112 |
| 충북 | 0.42 | 대전 | 266,845 | 충북 | 52,144 | 광주 | 101,180 | 강원도 | 33,420 | 충북 | 67,086 |
| 강원도 | 0.39 | 광주 | 248,711 | 대전 | 41,934 | 대전 | 100,905 | 대전 | 22,896 | 광주 | 48,485 |
| 전북 | 0.37 | 울산 | 130,834 | 제주도 | 20,511 | 울산 | 55,849 | 울산 | 21,286 | 울산 | 34,864 |
| 전남 | 0.31 | 제주도 | 118,711 | 울산 | 18,835 | 제주도 | 55,403 | 제주도 | 20,553 | 제주도 | 22,244 |

<시 단위별 재정력지수 및 전체보호대상자수>

| 재정력지수 | | 보호대상자 합계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80:20) | | 노령연금 (70:30) | | 영유아보육시설지원 (50:50) | | 장애수당 (70:30) | |
|-------|------|----------|---------|--------------------|--------|--------------|--------|-------------------|--------|--------------|--------|
| 지역 |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영유아수 | 지역 | 장애인수 |
| 과천시 | 2.21 | 전주시 | 141,937 | 전주시 | 23,455 | 고양시 | 64,919 | 전주시 | 19,849 | 전주시 | 50,230 |
| 용인시 | 2.09 | 성남시 | 121,272 | 포항시 | 18,394 | 성남시 | 61,730 | 부천시 | 19,565 | 익산시 | 32,196 |
| 성남시 | 1.43 | 수원시 | 117,592 | 성남시 | 17,861 | 수원시 | 56,214 | 청주시 | 18,061 | 수원시 | 28,583 |
| 수원시 | 1.43 | 부천시 | 107,280 | 익산시 | 16,978 | 부천시 | 49,463 | 수원시 | 17,208 | 성남시 | 27,313 |
| 고양시 | 1.31 | 청주시 | 95,877 | 안산시 | 16,662 | 용인시 | 49,104 | 광명시 | 16,800 | 군산시 | 27,022 |
| 안산시 | 1.26 | 익산시 | 92,150 | 군산시 | 16,321 | 전주시 | 48,402 | 김해시 | 15,663 | 의정부시 | 26,513 |
| 부천시 | 1.21 | 고양시 | 89,330 | 부천시 | 16,067 | 청주시 | 41,574 | 성남시 | 14,367 | 안성시 | 24,314 |
| 안양시 | 1.09 | 포항시 | 88,617 | 청주시 | 15,786 | 포항시 | 40,754 | 안성시 | 13,459 | 부천시 | 22,184 |
| 창원시 | 0.93 | 의정부시 | 79,622 | 수원시 | 15,586 | 안양시 | 38,415 | 의정부시 | 13,063 | 청주시 | 20,455 |
| 시흥시 | 0.93 | 군산시 | 77,922 | 여주시 | 13,473 | 경주시 | 36,084 | 천안시 | 12,791 | 포항시 | 19,255 |
| 군포시 | 0.81 | 안양시 | 73,738 | 목포시 | 12,744 | 익산시 | 34,838 | 창원시 | 12,311 | 광명시 | 18,380 |
| 화성시 | 0.80 | 마산시 | 73,038 | 고양시 | 12,467 | 천안시 | 34,803 | 마산시 | 11,346 | 마산시 | 16,927 |
| 의정부시 | 0.79 | 천안시 | 72,915 | 김해시 | 12,364 | 안산시 | 34,032 | 화성시 | 11,093 | 안양시 | 16,650 |
| 구미시 | 0.76 | 안산시 | 72,765 | 진주시 | 12,050 | 남양주시 | 34,028 | 안양시 | 10,539 | 정읍시 | 16,320 |
| 광주시 | 0.75 | 김해시 | 69,533 | 춘천시 | 11,564 | 마산시 | 33,876 | 진주시 | 10,352 | 김제시 | 16,230 |
| 청주시 | 0.71 | 진주시 | 67,935 | 정읍시 | 11,403 | 진주시 | 32,730 | 포항시 | 10,213 | 천안시 | 16,149 |
| 김포시 | 0.70 | 평택시 | 66,655 | 김제시 | 10,982 | 평택시 | 32,605 | 안산시 | 9,822 | 평택시 | 15,998 |
| 남양주시 | 0.69 | 여주시 | 65,728 | 마산시 | 10,888 | 여주시 | 30,591 | 과천시 | 9,147 | 화성시 | 15,916 |
| 광명시 | 0.69 | 광명시 | 62,952 | 순천시 | 10,811 | 의정부시 | 30,123 | 김포시 | 8,315 | 김해시 | 15,040 |

| | | | | | | | | | | | |
|------|------|------|--------|------|-------|------|--------|------|-------|------|--------|
| 구리시 | 0.67 | 경주시 | 62.864 | 의정부시 | 9.922 | 원주시 | 28.158 | 평택시 | 8.253 | 창원시 | 14.709 |
| 천안시 | 0.64 | 용인시 | 62.153 | 평택시 | 9.798 | 춘천시 | 27.936 | 익산시 | 8.138 | 여주시 | 14.425 |
| 이천시 | 0.63 | 안성시 | 60.878 | 안동시 | 9.722 | 안동시 | 27.898 | 양산시 | 7.979 | 김포시 | 12.840 |
| 김해시 | 0.63 | 화성시 | 56.453 | 경산시 | 9.370 | 군산시 | 27.849 | 구미시 | 7.894 | 진주시 | 12.803 |
| 의왕시 | 0.62 | 춘천시 | 56.189 | 경주시 | 9.286 | 순천시 | 27.112 | 광주시 | 7.508 | 안산시 | 12.248 |
| 전주시 | 0.61 | 창원시 | 55.542 | 천안시 | 9.171 | 김해시 | 26.465 | 경산시 | 7.489 | 원주시 | 12.213 |
| 포항시 | 0.61 | 순천시 | 55.438 | 원주시 | 8.852 | 과천시 | 26.307 | 여주시 | 7.239 | 남원시 | 11.722 |
| 평택시 | 0.59 | 원주시 | 55.253 | 나주시 | 8.368 | 충주시 | 25.779 | 목포시 | 7.059 | 순천시 | 11.586 |
| 과천시 | 0.59 | 정읍시 | 54.968 | 안양시 | 8.133 | 강릉시 | 25.753 | 군산시 | 6.730 | 경주시 | 11.503 |
| 오산시 | 0.57 | 남양주시 | 53.112 | 평균 | 7.867 | 화성시 | 25.232 | 평균 | 6.323 | 평균 | 11.400 |
| 하남시 | 0.55 | 김제시 | 51.004 | 구미시 | 7.745 | 상주시 | 24.463 | 원주시 | 6.030 | 과천시 | 10.928 |
| 양산시 | 0.55 | 목포시 | 50.754 | 남원시 | 7.742 | 평균 | 23.852 | 경주시 | 5.991 | 춘천시 | 10.778 |
| 마산시 | 0.54 | 안동시 | 50.550 | 남양주시 | 7.591 | 정읍시 | 23.497 | 순천시 | 5.929 | 동두천시 | 10.698 |
| 평균 | 0.54 | 평균 | 49.442 | 아산시 | 7.570 | 김천시 | 22.641 | 춘천시 | 5.911 | 광주시 | 10.385 |
| 광양시 | 0.48 | 강릉시 | 48.195 | 강릉시 | 7.108 | 논산시 | 22.418 | 아산시 | 5.575 | 목포시 | 10.166 |
| 양주시 | 0.48 | 경산시 | 47.071 | 영천시 | 7.101 | 창원시 | 22.234 | 강릉시 | 5.460 | 강릉시 | 9.874 |
| 포천시 | 0.47 | 충주시 | 47.033 | 논산시 | 6.958 | 아산시 | 21.879 | 동두천시 | 5.123 | 안동시 | 9.857 |
| 아산시 | 0.47 | 구미시 | 45.446 | 충주시 | 6.911 | 광명시 | 21.862 | 충주시 | 5.112 | 구미시 | 9.856 |
| 거제시 | 0.47 | 아산시 | 43.728 | 보령시 | 6.840 | 경산시 | 21.519 | 구리시 | 4.803 | 충주시 | 9.231 |
| 안성시 | 0.46 | 김포시 | 41.203 | 김천시 | 6.719 | 김제시 | 21.483 | 오산시 | 4.783 | 아산시 | 8.704 |
| 원주시 | 0.40 | 논산시 | 40.591 | 제천시 | 6.638 | 공주시 | 20.848 | 시흥시 | 4.709 | 경산시 | 8.693 |
| 목포시 | 0.39 | 김천시 | 39.760 | 영주시 | 6.307 | 목포시 | 20.785 | 진해시 | 4.403 | 제천시 | 8.105 |
| 경산시 | 0.38 | 남원시 | 39.421 | 창원시 | 6.287 | 나주시 | 20.203 | 사천시 | 4.312 | 고양시 | 7.964 |
| 진주시 | 0.37 | 과천시 | 37.988 | 과천시 | 6.062 | 밀양시 | 20.174 | 남양주시 | 4.102 | 오산시 | 7.821 |
| 익산시 | 0.37 | 나주시 | 37.979 | 밀양시 | 6.035 | 영천시 | 20.169 | 고양시 | 3.979 | 논산시 | 7.812 |
| 여주시 | 0.35 | 광주시 | 37.044 | 사천시 | 5.994 | 구미시 | 19.950 | 거제시 | 3.823 | 김천시 | 7.549 |
| 경주시 | 0.34 | 상주시 | 36.608 | 광명시 | 5.909 | 서산시 | 19.225 | 정읍시 | 3.748 | 거제시 | 7.405 |
| 군산시 | 0.34 | 시흥시 | 36.275 | 통영시 | 5.705 | 시흥시 | 19.081 | 광양시 | 3.722 | 남양주시 | 7.390 |
| 춘천시 | 0.33 | 양산시 | 36.130 | 공주시 | 5.703 | 영주시 | 18.904 | 포천시 | 3.644 | 양산시 | 7.288 |
| 진해시 | 0.33 | 공주시 | 35.747 | 서산시 | 5.640 | 안성시 | 18.343 | 논산시 | 3.403 | 구리시 | 7.021 |
| 동두천시 | 0.33 | 밀양시 | 34.776 | 용인시 | 5.630 | 남원시 | 17.253 | 안동시 | 3.073 | 공주시 | 7.018 |
| 강릉시 | 0.33 | 영천시 | 34.478 | 시흥시 | 5.625 | 이천시 | 17.220 | 서산시 | 3.006 | 시흥시 | 6.859 |
| 충주시 | 0.30 | 제천시 | 34.458 | 포천시 | 5.199 | 김포시 | 17.097 | 양주시 | 2.888 | 보령시 | 6.840 |
| 순천시 | 0.29 | 서산시 | 34.188 | 문경시 | 5.144 | 군포시 | 17.023 | 김천시 | 2.851 | 포천시 | 6.837 |
| 속초시 | 0.29 | 영주시 | 32.959 | 상주시 | 4.923 | 제천시 | 16.994 | 제천시 | 2.721 | 나주시 | 6.816 |
| 동해시 | 0.27 | 보령시 | 32.443 | 양산시 | 4.837 | 보령시 | 16.754 | 남원시 | 2.704 | 양주시 | 6.388 |
| 서산시 | 0.26 | 포천시 | 31.834 | 안성시 | 4.762 | 포천시 | 16.154 | 용인시 | 2.654 | 서산시 | 6.317 |
| 통영시 | 0.26 | 사천시 | 31.718 | 구리시 | 4.760 | 사천시 | 16.087 | 하남시 | 2.647 | 밀양시 | 5.970 |
| 김천시 | 0.22 | 거제시 | 29.226 | 군포시 | 4.607 | 양산시 | 16.025 | 속초시 | 2.607 | 상주시 | 5.910 |
| 사천시 | 0.22 | 군포시 | 28.539 | 거제시 | 4.317 | 문경시 | 15.820 | 밀양시 | 2.597 | 영주시 | 5.667 |
| 보령시 | 0.22 | 구리시 | 28.433 | 이천시 | 4.286 | 광주시 | 15.678 | 나주시 | 2.592 | 동해시 | 5.630 |
| 제천시 | 0.22 | 동두천시 | 27.298 | 화성시 | 4.211 | 통영시 | 13.876 | 의왕시 | 2.562 | 진해시 | 5.576 |
| 논산시 | 0.21 | 진해시 | 26.658 | 광양시 | 4.091 | 거제시 | 13.681 | 김제시 | 2.309 | 광양시 | 5.331 |
| 공주시 | 0.21 | 문경시 | 26.536 | 속초시 | 3.982 | 진해시 | 12.995 | 공주시 | 2.178 | 사천시 | 5.325 |
| 밀양시 | 0.20 | 통영시 | 26.491 | 삼척시 | 3.899 | 양주시 | 12.898 | 영주시 | 2.081 | 통영시 | 5.290 |
| 안동시 | 0.20 | 양주시 | 26.004 | 양주시 | 3.830 | 광양시 | 11.999 | 군포시 | 2.075 | 영천시 | 5.140 |
| 영주시 | 0.19 | 과천시 | 25.439 | 진해시 | 3.684 | 구리시 | 11.848 | 영천시 | 2.068 | 군포시 | 4.833 |
| 영천시 | 0.19 | 광양시 | 25.143 | 동해시 | 3.499 | 삼척시 | 11.249 | 보령시 | 2.009 | 용인시 | 4.763 |
| 태백시 | 0.17 | 이천시 | 24.537 | 광주시 | 3.472 | 동해시 | 10.330 | 동해시 | 1.859 | 과천시 | 4.551 |
| 계룡시 | 0.17 | 동해시 | 21.318 | 김포시 | 2.950 | 의왕시 | 9.895 | 통영시 | 1.620 | 문경시 | 4.424 |
| 남원시 | 0.16 | 오산시 | 20.975 | 동두천시 | 2.920 | 하남시 | 9.402 | 이천시 | 1.592 | 삼척시 | 4.385 |
| 김제시 | 0.16 | 삼척시 | 20.941 | 하남시 | 2.144 | 속초시 | 8.660 | 삼척시 | 1.408 | 의왕시 | 4.281 |
| 나주시 | 0.15 | 속초시 | 18.884 | 오산시 | 1.814 | 동두천시 | 8.557 | 상주시 | 1.312 | 하남시 | 3.965 |
| 삼척시 | 0.15 | 하남시 | 18.159 | 태백시 | 1.792 | 오산시 | 6.556 | 문경시 | 1.148 | 속초시 | 3.635 |
| 정읍시 | 0.15 | 의왕시 | 17.984 | 의왕시 | 1.245 | 태백시 | 6.120 | 과천시 | 1.067 | 태백시 | 3.610 |
| 문경시 | 0.14 | 태백시 | 12.474 | 과천시 | 822 | 과천시 | 4.540 | 태백시 | 952 | 이천시 | 1.438 |
| 상주시 | 0.14 | 계룡시 | 4.030 | 계룡시 | 558 | 계룡시 | 1.715 | 계룡시 | 831 | 계룡시 | 926 |

<군 단위별 재정력지수 및 전체보호대상자수>

| 재정력지수 | | 보호대상자 합계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80:20) | | 노령연금(70:30) | | 영유아보육시설지원(50:50) | | 장애수당(70:30) | |
|-------|------|----------|--------|-------------------|-------|-------------|--------|------------------|-------|-------------|--------|
| 지역 |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수급자수 | 지역 | 영유아수 | 지역 | 장애인수 |
| 울주군 | 0.55 | 고흥군 | 37,635 | 고흥군 | 6,745 | 고흥군 | 23,133 | 여주군 | 5,579 | 달성군 | 11,718 |
| 달성군 | 0.40 | 완주군 | 33,788 | 부안군 | 5,833 | 당진군 | 19,434 | 울주군 | 4,600 | 완주군 | 11,508 |
| 여주군 | 0.39 | 청원군 | 33,493 | 완주군 | 5,519 | 청원군 | 19,094 | 달성군 | 3,651 | 고창군 | 8,322 |
| 기장군 | 0.39 | 달성군 | 33,169 | 해남군 | 5,497 | 의성군 | 18,512 | 청원군 | 3,616 | 부안군 | 8,226 |
| 칠곡군 | 0.34 | 당진군 | 32,094 | 영광군 | 5,230 | 해남군 | 18,377 | 화순군 | 3,070 | 울주군 | 7,249 |
| 용진군 | 0.34 | 울주군 | 30,911 | 울진군 | 5,067 | 부여군 | 18,052 | 당진군 | 2,975 | 기장군 | 7,020 |
| 청원군 | 0.30 | 해남군 | 30,730 | 완도군 | 4,844 | 예산군 | 17,534 | 칠곡군 | 2,923 | 청원군 | 6,436 |
| 단양군 | 0.29 | 부여군 | 29,862 | 화순군 | 4,611 | 홍성군 | 16,165 | 완주군 | 2,714 | 고흥군 | 6,374 |
| 당진군 | 0.29 | 고창군 | 29,488 | 무안군 | 4,541 | 울주군 | 15,845 | 단양군 | 2,621 | 당진군 | 6,234 |
| 가평군 | 0.28 | 부안군 | 29,288 | 부여군 | 4,489 | 고창군 | 15,431 | 연기군 | 2,507 | 여주군 | 5,829 |
| 괴산군 | 0.27 | 여주군 | 29,176 | 고창군 | 4,472 | 합천군 | 15,148 | 연천군 | 2,222 | 부여군 | 5,516 |
| 양평군 | 0.26 | 예산군 | 27,578 | 연기군 | 4,353 | 서천군 | 14,975 | 영암군 | 2,113 | 단양군 | 5,248 |
| 태안군 | 0.26 | 의성군 | 26,857 | 청원군 | 4,347 | 보성군 | 14,404 | 괴산군 | 2,082 | 예산군 | 5,143 |
| 연기군 | 0.25 | 홍성군 | 26,066 | 장흥군 | 4,166 | 창녕군 | 14,362 | 기장군 | 1,944 | 해남군 | 5,003 |
| 정선군 | 0.25 | 화순군 | 24,879 | 달성군 | 4,151 | 남해군 | 14,360 | 홍성군 | 1,902 | 임실군 | 4,922 |
| 울진군 | 0.23 | 서천군 | 24,744 | 칠곡군 | 4,097 | 부안군 | 14,077 | 해남군 | 1,853 | 홍성군 | 4,698 |
| 연천군 | 0.23 | 영광군 | 23,503 | 영암군 | 4,073 | 양평군 | 14,058 | 부여군 | 1,805 | 서천군 | 4,415 |
| 영광군 | 0.23 | 연기군 | 23,152 | 장성군 | 4,035 | 예천군 | 14,053 | 무안군 | 1,716 | 순창군 | 4,376 |
| 완주군 | 0.22 | 무안군 | 22,985 | 창녕군 | 3,861 | 완주군 | 14,047 | 홍천군 | 1,693 | 무안군 | 4,272 |
| 함안군 | 0.20 | 창녕군 | 22,949 | 담양군 | 3,842 | 여주군 | 13,947 | 서천군 | 1,562 | 연기군 | 4,145 |
| 고성군 | 0.19 | 보성군 | 22,321 | 금산군 | 3,832 | 달성군 | 13,649 | 영광군 | 1,501 | 칠곡군 | 4,053 |
| 강화군 | 0.19 | 칠곡군 | 22,195 | 여주군 | 3,821 | 거창군 | 13,337 | 거창군 | 1,413 | 영광군 | 4,048 |
| 고성군 | 0.19 | 완도군 | 22,149 | 서천군 | 3,792 | 화순군 | 13,326 | 함안군 | 1,400 | 의성군 | 4,013 |
| 창녕군 | 0.18 | 함천군 | 22,073 | 영덕군 | 3,734 | 강화군 | 13,086 | 고흥군 | 1,383 | 진안군 | 3,900 |
| 금산군 | 0.18 | 남해군 | 22,042 | 예산군 | 3,678 | 완도군 | 12,803 | 칠원군 | 1,354 | 화순군 | 3,872 |
| 예산군 | 0.18 | 영암군 | 21,791 | 하동군 | 3,671 | 영광군 | 12,724 | 하동군 | 1,348 | 영암군 | 3,710 |
| 홍성군 | 0.18 | 거창군 | 21,761 | 함평군 | 3,661 | 음성군 | 12,576 | 강화군 | 1,321 | 평군 | 3,570 |
| 홍천군 | 0.17 | 예천군 | 21,254 | 신안군 | 3,658 | 무안군 | 12,456 | 고창군 | 1,263 | 무주군 | 3,548 |
| 평창군 | 0.17 | 기장군 | 21,246 | 의성군 | 3,606 | 하동군 | 12,413 | 평군 | 1,240 | 장수군 | 3,526 |
| 영암군 | 0.17 | 하동군 | 20,945 | 거창군 | 3,573 | 연기군 | 12,147 | 예산군 | 1,223 | 창녕군 | 3,520 |
| 화순군 | 0.16 | 양평군 | 20,922 | 보성군 | 3,567 | 고성군 | 12,084 | 울진군 | 1,209 | 하동군 | 3,513 |
| 서천군 | 0.16 | 울진군 | 20,852 | 진도군 | 3,498 | 영암군 | 11,895 | 창녕군 | 1,206 | 가평군 | 3,493 |
| 옥천군 | 0.16 | 강화군 | 20,411 | 당진군 | 3,451 | 금산군 | 11,881 | 태안군 | 1,172 | 함안군 | 3,484 |
| 부여군 | 0.16 | 금산군 | 20,269 | 예천군 | 3,438 | 홍천군 | 11,801 | 강진군 | 1,171 | 보성군 | 3,479 |
| 하동군 | 0.16 | 장흥군 | 19,817 | 양평군 | 3,407 | 청도군 | 11,678 | 부안군 | 1,152 | 금산군 | 3,445 |
| 평군 | 0.16 | 홍천군 | 19,438 | 홍성군 | 3,301 | 장흥군 | 11,662 | 남해군 | 1,132 | 완도군 | 3,440 |
| 거창군 | 0.15 | 고성군 | 19,308 | 기장군 | 3,286 | 울진군 | 11,491 | 금산군 | 1,111 | 거창군 | 3,438 |
| 양양군 | 0.15 | 함안군 | 19,073 | 함안군 | 3,268 | 신안군 | 11,321 | 고성군 | 1,079 | 고성군 | 3,428 |
| 증평군 | 0.14 | 신안군 | 19,005 | 울주군 | 3,217 | 영동군 | 11,218 | 완도군 | 1,062 | 옥천군 | 3,416 |
| 성주군 | 0.14 | 담양군 | 18,747 | 남해군 | 3,210 | 칠곡군 | 11,122 | 횡성군 | 1,056 | 영동군 | 3,411 |
| 고령군 | 0.14 | 음성군 | 18,731 | 강진군 | 3,150 | 담양군 | 11,120 | 양평군 | 1,055 | 홍천군 | 3,399 |
| 횡성군 | 0.14 | 평군 | 18,695 | 평군 | 3,102 | 영덕군 | 11,091 | 옥천군 | 916 | 연천군 | 3,368 |
| 칠원군 | 0.13 | 함평군 | 18,474 | 곡성군 | 3,085 | 태안군 | 11,036 | 진천군 | 883 | 남해군 | 3,340 |
| 진천군 | 0.13 | 장성군 | 18,456 | 함양군 | 3,064 | 함안군 | 10,921 | 보성군 | 871 | 예천군 | 3,325 |
| 남해군 | 0.13 | 영덕군 | 18,360 | 합천군 | 3,060 | 함평군 | 10,850 | 함평군 | 862 | 합천군 | 3,305 |
| 영동군 | 0.13 | 영동군 | 18,265 | 구례군 | 2,972 | 옥천군 | 10,831 | 곡성군 | 860 | 신안군 | 3,268 |
| 합천군 | 0.13 | 태안군 | 17,741 | 연천군 | 2,926 | 평군 | 10,782 | 증평군 | 851 | 장흥군 | 3,219 |
| 산청군 | 0.12 | 청도군 | 17,605 | 음성군 | 2,910 | 강진군 | 10,676 | 영동군 | 814 | 태안군 | 3,171 |
| 무주군 | 0.12 | 옥천군 | 17,585 | 강화군 | 2,884 | 장성군 | 10,551 | 장성군 | 799 | 강화군 | 3,120 |
| 담양군 | 0.12 | 강진군 | 17,575 | 산청군 | 2,876 | 함양군 | 10,517 | 담양군 | 783 | 함평군 | 3,101 |
| 고창군 | 0.12 | 괴산군 | 16,956 | 영동군 | 2,822 | 성주군 | 9,959 | 양구군 | 778 | 울진군 | 3,085 |

| | | | | | | | | | | | |
|-----|------|-----|--------|-----|-------|-----|-------|-----|-----|-----|-------|
| 예천군 | 0.12 | 함양군 | 16,731 | 봉화군 | 2,803 | 괴산군 | 9,744 | 가평군 | 776 | 장성군 | 3,071 |
| 영월군 | 0.12 | 임실군 | 16,700 | 청도군 | 2,734 | 산청군 | 9,660 | 정선군 | 775 | 담양군 | 3,002 |
| 영덕군 | 0.12 | 단양군 | 16,198 | 고성군 | 2,717 | 봉화군 | 9,429 | 장흥군 | 770 | 영덕군 | 2,888 |
| 해남군 | 0.12 | 연천군 | 15,906 | 괴산군 | 2,681 | 보은군 | 9,071 | 신안군 | 758 | 영월군 | 2,725 |
| 인제군 | 0.12 | 산청군 | 15,756 | 홍천군 | 2,545 | 기장군 | 8,996 | 함양군 | 750 | 성주군 | 2,626 |
| 함양군 | 0.11 | 가평군 | 15,681 | 가평군 | 2,530 | 곡성군 | 8,996 | 의령군 | 744 | 강진군 | 2,578 |
| 무안군 | 0.11 | 진도군 | 15,477 | 임실군 | 2,526 | 청양군 | 8,933 | 음성군 | 732 | 산청군 | 2,559 |
| 장성군 | 0.11 | 곡성군 | 15,361 | 청송군 | 2,455 | 진도군 | 8,893 | 의성군 | 726 | 정선군 | 2,557 |
| 무안군 | 0.11 | 순창군 | 15,339 | 옥천군 | 2,422 | 가평군 | 8,882 | 인제군 | 716 | 청도군 | 2,536 |
| 청도군 | 0.11 | 성주군 | 15,290 | 영양군 | 2,383 | 의령군 | 8,875 | 영월군 | 690 | 음성군 | 2,513 |
| 음성군 | 0.11 | 봉화군 | 14,829 | 진천군 | 2,364 | 임실군 | 8,671 | 성주군 | 685 | 횡성군 | 2,500 |
| 양구군 | 0.11 | 보은군 | 14,124 | 태안군 | 2,362 | 진천군 | 8,609 | 고성군 | 680 | 괴산군 | 2,449 |
| 청양군 | 0.11 | 횡성군 | 14,082 | 황성군 | 2,280 | 황성군 | 8,246 | 산청군 | 661 | 진도군 | 2,437 |
| 진도군 | 0.11 | 진안군 | 13,539 | 무주군 | 2,279 | 순창군 | 8,232 | 고령군 | 661 | 곡성군 | 2,420 |
| 완도군 | 0.11 | 의령군 | 13,465 | 철원군 | 2,226 | 영월군 | 7,726 | 청도군 | 657 | 양평군 | 2,402 |
| 의령군 | 0.10 | 진천군 | 13,237 | 고령군 | 2,182 | 군위군 | 7,723 | 진도군 | 649 | 함양군 | 2,400 |
| 의성군 | 0.10 | 청양군 | 13,203 | 진안군 | 2,180 | 연천군 | 7,390 | 영덕군 | 647 | 보은군 | 2,315 |
| 고흥군 | 0.10 | 영월군 | 12,917 | 보은군 | 2,166 | 청송군 | 7,270 | 청양군 | 624 | 평창군 | 2,285 |
| 장흥군 | 0.10 | 구례군 | 12,719 | 순창군 | 2,109 | 평창군 | 7,195 | 순창군 | 622 | 구례군 | 2,281 |
| 보은군 | 0.10 | 무주군 | 12,297 | 성주군 | 2,020 | 고령군 | 7,076 | 구례군 | 593 | 철원군 | 2,197 |
| 화천군 | 0.09 | 철원군 | 12,249 | 장수군 | 1,932 | 진안군 | 6,989 | 임실군 | 581 | 봉화군 | 2,176 |
| 곡성군 | 0.09 | 청송군 | 12,114 | 단양군 | 1,923 | 구례군 | 6,873 | 보은군 | 572 | 증평군 | 2,126 |
| 함평군 | 0.09 | 고령군 | 12,007 | 평창군 | 1,850 | 정선군 | 6,628 | 합천군 | 560 | 청양군 | 2,101 |
| 군위군 | 0.09 | 장수군 | 11,994 | 양양군 | 1,845 | 철원군 | 6,472 | 장수군 | 519 | 의령군 | 2,091 |
| 임실군 | 0.09 | 평창군 | 11,824 | 화천군 | 1,796 | 단양군 | 6,406 | 양양군 | 516 | 고령군 | 2,088 |
| 강진군 | 0.09 | 정선군 | 11,632 | 영월군 | 1,776 | 무주군 | 6,099 | 평창군 | 494 | 청송군 | 1,906 |
| 보성군 | 0.09 | 군위군 | 11,191 | 의령군 | 1,755 | 장수군 | 6,017 | 청송군 | 483 | 고성군 | 1,753 |
| 구례군 | 0.09 | 고성군 | 9,421 | 고성군 | 1,699 | 영양군 | 5,322 | 진안군 | 470 | 양양군 | 1,752 |
| 울릉군 | 0.09 | 양양군 | 9,259 | 정선군 | 1,672 | 고성군 | 5,289 | 화천군 | 441 | 군위군 | 1,594 |
| 장수군 | 0.08 | 영양군 | 9,202 | 군위군 | 1,634 | 양양군 | 5,146 | 예천군 | 438 | 인제군 | 1,466 |
| 순창군 | 0.08 | 인제군 | 8,228 | 인제군 | 1,547 | 인제군 | 4,499 | 봉화군 | 421 | 진천군 | 1,381 |
| 봉화군 | 0.08 | 증평군 | 7,835 | 청양군 | 1,545 | 화천군 | 3,716 | 무주군 | 371 | 영양군 | 1,323 |
| 진안군 | 0.08 | 화천군 | 7,239 | 양구군 | 1,527 | 증평군 | 3,684 | 홍천군 | 263 | 화천군 | 1,286 |
| 청송군 | 0.08 | 양구군 | 6,442 | 증평군 | 1,174 | 양구군 | 3,070 | 군위군 | 240 | 양구군 | 1,067 |
| 영양군 | 0.07 | 웅진군 | 4,191 | 울릉군 | 485 | 웅진군 | 2,717 | 영양군 | 174 | 웅진군 | 755 |
| 신안군 | 0.07 | 울릉군 | 2,363 | 웅진군 | 456 | 울릉군 | 1,492 | 울릉군 | 39 | 울릉군 | 347 |

<구 단위별 재정력지수 및 전체보호대상지수>

| 재정력지수 | 총계 | 기초생부수급자수 (80:20) | 노인인구수 (70:30) | 영유아수 (50:50) | 장애인수 (70:30) | |
|-------|------|---------------------|------------------|-----------------|-----------------|-------------|
| 서울강남구 | 2.27 | 달서구 106,962 | 달서구 22,305 | 노원구 43,393 | 광주북구 13,052 | 달서구 38,490 |
| 서울중구 | 1.49 | 노원구 96,765 | 광주북구 22,063 | 서울성북구 37,779 | 광주광산구 12,840 | 대전서구 30,826 |
| 서초구 | 1.31 | 대구북구 86,477 | 노원구 21,147 | 은평구 37,143 | 부평구 12,041 | 대구북구 30,730 |
| 송파구 | 0.92 | 서울강서구 84,088 | 서울강서구 19,709 | 부산진구 36,224 | 대구북구 11,277 | 부산진구 28,362 |
| 영등포구 | 0.89 | 부산진구 84,033 | 부평구 15,364 | 부평구 35,957 | 노원구 10,839 | 해운대구 26,996 |
| 종로구 | 0.85 | 부평구 83,398 | 수성구 15,065 | 서울강서구 35,413 | 달서구 10,766 | 대구동구 25,990 |
| 서울강서구 | 0.54 | 수성구 82,451 | 부산북구 15,061 | 달서구 35,401 | 서울강서구 9,362 | 수성구 25,734 |
| 용산구 | 0.53 | 광주북구 81,648 | 부산진구 14,018 | 관악구 34,422 | 관악구 9,129 | 사하구 25,424 |
| 양천구 | 0.53 | 대구동구 78,431 | 대구북구 13,929 | 수성구 34,247 | 양천구 8,841 | 부산북구 23,612 |
| 부산진구 | 0.50 | 해운대구 77,639 | 사하구 13,775 | 인천남구 34,082 | 인천서구 8,697 | 노원구 21,386 |
| 서울강동구 | 0.50 | 대전서구 75,846 | 해운대구 13,283 | 송파구 33,274 | 중랑구 8,526 | 사상구 21,014 |
| 해운대구 | 0.47 | 사하구 71,784 | 대구동구 12,548 | 대구동구 32,552 | 서울성북구 8,435 | 부산남구 20,514 |
| 울산남구 | 0.46 | 은평구 69,202 | 대전동구 12,163 | 동대문구 31,713 | 은평구 8,420 | 대전동구 20,416 |
| 성북구 | 0.46 | 관악구 68,147 | 광주광산구 11,453 | 광주북구 31,282 | 광주서구 8,346 | 대전중구 20,288 |

| | | | | | | | | | | | | |
|-------|------|-------|--------|-------|--------|--------|--------|-------|-------|-------|--------|--------|
| 마포구 | 0.44 | 성북구 | 67,305 | 광주서구 | 10,998 | 동작구 | 31,239 | 송파구 | 8,162 | 부평구 | 20,036 | |
| 동작구 | 0.44 | 인천남구 | 66,328 | 사상구 | 10,961 | 서대문구 | 31,213 | 인천남동구 | 8,096 | 서울강서구 | 19,604 | |
| 구로구 | 0.42 | 부산북구 | 66,193 | 대전중구 | 10,412 | 대구북구 | 30,541 | 구로구 | 7,883 | 대구서구 | 18,478 | |
| 동대문구 | 0.40 | 중랑구 | 62,317 | 인천남동구 | 10,384 | 마포구 | 30,310 | 강북구 | 7,579 | 대덕구 | 17,278 | |
| 평균 | 0.40 | 송파구 | 60,562 | 인천남구 | 10,155 | 해운대구 | 30,213 | 영등포구 | 7,502 | 금정구 | 16,362 | |
| 사하구 | 0.39 | 강북구 | 59,861 | 중랑구 | 10,064 | 영등포구 | 29,968 | 수성구 | 7,405 | 동래구 | 15,854 | |
| 성동구 | 0.39 | 동대문구 | 59,352 | 서울강북구 | 9,553 | 서울강북구 | 29,804 | 서울강동구 | 7,381 | 인천남구 | 15,712 | |
| 광진구 | 0.38 | 대전동구 | 58,846 | 관악구 | 9,400 | 중랑구 | 29,409 | 계양구 | 7,348 | 광주북구 | 15,251 | |
| 유성구 | 0.37 | 대전중구 | 58,276 | 대전서구 | 9,318 | 서울강남구 | 29,041 | 대구동구 | 7,341 | 관악구 | 15,196 | |
| 관악구 | 0.37 | 부산남구 | 58,122 | 대구서구 | 9,257 | 대전서구 | 28,918 | 동작구 | 7,251 | 영도구 | 15,072 | |
| 울산북구 | 0.37 | 영등포구 | 57,805 | 은평구 | 8,756 | 양천구 | 28,151 | 해운대구 | 7,147 | 은평구 | 14,883 | |
| 서대문구 | 0.37 | 양천구 | 56,860 | 평균 | 8,297 | 도봉구 | 27,913 | 동대문구 | 7,128 | 중랑구 | 14,318 | |
| 동래구 | 0.36 | 인천남동구 | 55,767 | 금정구 | 8,092 | 26,550 | 구로구 | 7,079 | 성동구 | 7,079 | 평균 | 14,042 |
| 사상구 | 0.36 | 동작구 | 55,675 | 서울강남구 | 7,969 | 서울강동구 | 26,040 | 서울강남구 | 7,047 | 송파구 | 13,970 | |
| 울산동구 | 0.36 | 서울강남구 | 55,226 | 인천서구 | 7,916 | 사하구 | 26,014 | 광진구 | 7,023 | 연제구 | 13,890 | |
| 노원구 | 0.35 | 사상구 | 54,322 | 영도구 | 7,901 | 성동구 | 25,296 | 대전서구 | 6,784 | 성북구 | 13,655 | |
| 부산중구 | 0.35 | 구로구 | 54,150 | 영등포구 | 7,888 | 부산남구 | 25,189 | 서대문구 | 6,739 | 인천남동구 | 13,504 | |
| 금정구 | 0.34 | 마포구 | 53,665 | 광주남구 | 7,818 | 인천남동구 | 23,783 | 도봉구 | 6,659 | 양천구 | 13,390 | |
| 인천중구 | 0.34 | 광주광산구 | 53,485 | 동대문구 | 7,772 | 대전중구 | 23,500 | 마포구 | 6,632 | 인천서구 | 13,125 | |
| 도봉구 | 0.34 | 서대문구 | 53,124 | 부산남구 | 7,756 | 서초구 | 23,287 | 사하구 | 6,571 | 구로구 | 13,080 | |
| 중랑구 | 0.33 | 대구서구 | 52,517 | 부산동구 | 7,647 | 평균 | 23,097 | 인천남구 | 6,379 | 강북구 | 12,925 | |
| 은평구 | 0.33 | 서울강동구 | 51,787 | 성북구 | 7,436 | 광진구 | 22,522 | 부산북구 | 6,227 | 강동구 | 12,892 | |
| 인천서구 | 0.33 | 평균 | 51,429 | 연수구 | 7,135 | 대전동구 | 22,316 | 울산남구 | 6,060 | 대구남구 | 12,874 | |
| 강북구 | 0.32 | 인천서구 | 50,262 | 대덕구 | 7,034 | 금정구 | 22,060 | 평균 | 5,993 | 동대문구 | 12,739 | |
| 광주서구 | 0.31 | 금정구 | 49,838 | 금천구 | 6,738 | 동래구 | 21,693 | 금천구 | 5,941 | 영등포구 | 12,447 | |
| 금정구 | 0.31 | 도봉구 | 49,677 | 성동구 | 6,708 | 용산구 | 21,609 | 부산진구 | 5,429 | 유성구 | 12,302 | |
| 부산남구 | 0.30 | 성동구 | 49,271 | 대구남구 | 6,650 | 부산북구 | 21,293 | 서초구 | 5,305 | 동작구 | 11,545 | |
| 수영구 | 0.30 | 광주서구 | 49,266 | 구로구 | 6,637 | 인천서구 | 20,524 | 연수구 | 5,298 | 서울강남구 | 11,169 | |
| 대전서구 | 0.28 | 동래구 | 46,762 | 양천구 | 6,478 | 대구서구 | 20,484 | 사상구 | 4,837 | 마포구 | 11,071 | |
| 달서구 | 0.28 | 광진구 | 43,881 | 울산중구 | 6,412 | 광주서구 | 19,938 | 부산남구 | 4,663 | 수영구 | 10,992 | |
| 대구중구 | 0.28 | 영도구 | 42,912 | 부산서구 | 6,050 | 대구남구 | 19,628 | 광주남구 | 4,569 | 광주광산구 | 10,812 | |
| 연제구 | 0.27 | 대덕구 | 42,761 | 연제구 | 6,011 | 광주광산구 | 18,380 | 울산중구 | 4,569 | 부산서구 | 10,682 | |
| 광주북구 | 0.26 | 대구남구 | 42,083 | 계양구 | 5,723 | 광주남구 | 18,365 | 대구서구 | 4,298 | 도봉구 | 10,578 | |
| 인천남동구 | 0.26 | 연제구 | 40,585 | 마포구 | 5,652 | 연제구 | 17,813 | 대전중구 | 4,076 | 성동구 | 10,188 | |
| 광산구 | 0.26 | 계양구 | 39,745 | 동작구 | 5,640 | 사상구 | 17,510 | 대덕구 | 4,069 | 광주서구 | 9,984 | |
| 수성구 | 0.25 | 서초구 | 38,849 | 서울강동구 | 5,474 | 영도구 | 17,327 | 유성구 | 4,016 | 부산동구 | 9,906 | |
| 광주동구 | 0.25 | 광주남구 | 38,562 | 동래구 | 5,446 | 계양구 | 16,883 | 대전동구 | 3,951 | 서대문구 | 9,901 | |
| 부산강서구 | 0.25 | 금천구 | 37,775 | 광주동구 | 5,373 | 금천구 | 16,872 | 동래구 | 3,769 | 계양구 | 9,791 | |
| 부산동구 | 0.24 | 연수구 | 36,020 | 서대문구 | 5,271 | 부산수영구 | 16,647 | 용산구 | 3,763 | 광진구 | 9,745 | |
| 대덕구 | 0.23 | 용산구 | 35,924 | 송파구 | 5,156 | 부산서구 | 16,300 | 종로구 | 3,545 | 울산남구 | 9,646 | |
| 울산중구 | 0.23 | 부산서구 | 35,347 | 울산남구 | 4,947 | 종로구 | 16,016 | 금정구 | 3,324 | 연수구 | 8,532 | |
| 대구북구 | 0.22 | 울산남구 | 34,777 | 광진구 | 4,591 | 연수구 | 15,055 | 울산북구 | 3,219 | 금천구 | 8,224 | |
| 부산북구 | 0.22 | 수영구 | 34,141 | 도봉구 | 4,527 | 대덕구 | 14,380 | 서울중구 | 3,138 | 광주남구 | 7,810 | |
| 부평구 | 0.21 | 부산동구 | 33,298 | 부산수영구 | 4,166 | 울산남구 | 14,124 | 대구남구 | 2,931 | 울산중구 | 7,759 | |
| 대전중구 | 0.21 | 울산중구 | 31,896 | 서울중구 | 3,817 | 부산동구 | 13,576 | 연제구 | 2,871 | 서초구 | 7,434 | |
| 인천남구 | 0.21 | 유성구 | 31,116 | 용산구 | 3,700 | 광주동구 | 13,215 | 울산동구 | 2,838 | 용산구 | 6,852 | |
| 연수구 | 0.20 | 종로구 | 28,076 | 대구중구 | 3,599 | 울산중구 | 13,156 | 영도구 | 2,612 | 대구중구 | 6,516 | |
| 계양구 | 0.19 | 광주동구 | 25,750 | 인천중구 | 3,174 | 서울중구 | 12,467 | 광주동구 | 2,534 | 광주중구 | 5,562 | |
| 부산서구 | 0.17 | 서울중구 | 23,830 | 인천동구 | 3,163 | 유성구 | 11,791 | 부산수영구 | 2,336 | 종로구 | 5,487 | |
| 영도구 | 0.17 | 대구중구 | 21,330 | 종로구 | 3,028 | 대구중구 | 10,020 | 부산서구 | 2,315 | 부산강서구 | 5,086 | |
| 대구동구 | 0.17 | 울산동구 | 17,261 | 유성구 | 3,007 | 인천중구 | 8,344 | 부산동구 | 2,169 | 울산북구 | 4,648 | |
| 광주남구 | 0.17 | 인천중구 | 17,208 | 서초구 | 2,823 | 인천중구 | 8,297 | 인천중구 | 1,940 | 광주동구 | 4,628 | |
| 대구서구 | 0.16 | 인천동구 | 16,846 | 울산동구 | 2,480 | 부산강서구 | 6,675 | 인천동구 | 1,584 | 서울중구 | 4,408 | |
| 대구남구 | 0.14 | 울산북구 | 15,989 | 부산중구 | 2,407 | 부산중구 | 6,406 | 부산강서구 | 1,323 | 인천중구 | 3,797 | |
| 대전동구 | 0.13 | 부산강서구 | 15,456 | 부산강서구 | 2,372 | 울산동구 | 6,381 | 대구중구 | 1,195 | 부산중구 | 3,796 | |
| 인천동구 | 0.11 | 부산중구 | 13,671 | 울산북구 | 1,779 | 울산북구 | 6,343 | 부산중구 | 1,062 | 인천동구 | 3,755 | |